동작구의회공고 제2019-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재 발생 시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아 화재 초기 골든타임의 최대한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안 제3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사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홍보(안 제4조)

다. 방연바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시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2.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4.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5. 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공공기관

6.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협력 등)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시설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